

정보통신진흥협회

定 款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 稱) 이 協會는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關한 法率 第26條에 依하여 設立하며 情報通信振興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라 稱하고, 英文으로는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ROMOTION ASSOCIATION (OF KOREA)”로 表記한다.

第 2 條(目 的) 이 協會는 電算網事業者의 協力과 紐帶強化를 通하여 電算網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電算網의 普及擴張과 利用促進 및 情報化社會의 基盤造成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所在地) 이 協會는 主된 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둔다. 다만, 必要에 따라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4 條(事 業) 이 協會는 第 2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電算網의 普及擴張과 利用促進을 爲한 調査
2. 情報化社會의 認識提高를 爲한 弘報活動
3. 電算網의 技術動向 調査
4. 電算網에 關한 技術情報 提供
5. 電算網에 關聯된 學術行事 및 展示會等の 開催
6. 電算網에 關한 技術普及을 爲한 各種 刊行物の 發刊 業務
7. 會員의 共同利益 및 協力を 爲한 共濟活動
과 基金造成에 關한 事項
8. 電算網에 關聯된 國際類似機關과 技術協力 및 交流
9. S/W流通센터를 통한 共同事業 遂行
10. 會員間의 親睦圖謀 및 權益擁護
11. 電算網을 爲하여 遞信部長官이 委託하는 事業
12. 其他 協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2 章 會 員

第 5 條(會 員) ①協會의 會員은 情報通信役務提

供業者, 電算網事業者, 公衆通信事業者로 構成된다.

②協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以外的 者를 準會員으로 加入하게 할 수 있다.

第6條(入會) 第5條에 該當하는 者로서 入會를 希望하는 者는 入會申請書를 提出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條(會費) ①協會의 會費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加入費는 50萬원으로 하며, 會員으로 加入할 때에 納付한다.
2. 月會費는 5萬원으로 하며, 分期別로 納付하되 每分期 初에 納付한다.
3. 協會는 總會의 決議와 遞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特別會費를 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②理事會는 會員의 資産規模等を 考慮하여 第1項 第2號에 依한 月會費를 等級別로 次等納付하게 할 수 있다.

第8條(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진다.

1. 定款 및 諸規定 遵守義務
2.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事項 遵守義務
3. 會費 納付의 義務

第9條(會員의 權利) 會員은 協會의 모든 權益을 고루 가지며, 任員의 選任權과 被選任權 및 各種 事業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다만, 準會員은 議決權과 選任權 및 被選任權이 없다.

第10條(脫會 및 除名) ①會員이 脫會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定하는 節次에 依하여 脫會願을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未納된 會費는 納付하여야 하며, 既 納付된 會費는 反還하지 아니한다. ②會員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였을 境遇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除名할 수 있다.

1. 協會의 名譽를 毀損하였을 境遇
2. 第5條의 規定에 該當되지 아니하거나 法人이 解散되었을 境遇
3. 6個月以上 所定の 會費를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境遇
4. 其他 理事會에서 除名이 合當하다고 認定할 境遇

第3章 任 員

第11條(任 員) ①協會는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 人
2. 副會長 5人以内
3. 理 事 10人以内
4. 監 事 1 人

②任員은 非常勤職으로 한다. 다만 會長을 除外을 任員中 若干名은 總會의 決議로서 常勤職으로 할 수 있다.

③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延任할 수 있다.

第12條(任員의 選任 및 報酬) ①任員은 總會에서 選任한다. 다만, 常勤職 任員은 理事會의 決議와 遞信部長官의 同議를 얻어 會長이 任免하며, 協會의 會員임을 要하지 아니한다.

②常勤任員은 理事會에서 定한 一定한 報酬를 支給받으며, 非常勤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理事會의 決議로 日當, 旅費, 接待費等 必要經費를 支給받을 수 있다.

第13條(任員의 職務) ①會長은 協會를 代表하고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되며 會務를 總括한다.

②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의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理事는 協會 運營上의 諸般 重要事項에 對한 議決權을 가진다.

④監事는 協會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14條(任員의 補選) 任員의 任期中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1月 以內에 後任者를 選出하여야 하며 그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5條(顧 問) ①協會에 顧問 若干名을 둘 수 있다.

②顧問은 協會 및 電算網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人事로서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 會長이 推

戴한다.

第16條(諮問委員) ①協會에 諮問委員 若干名을 들 수 있다.

②諮問委員은 電算網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로서 會長이 委囑한다.

第4章 會 議

第17條(種別) 協會의 會議는 總會 및 理事會로 하며, 必要한 境遇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委員會를 들 수 있다.

第18條(構成) ①總會는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會員으로 構成한다.

②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서 構成된다.

③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는 理事會가 別途로 定하는 規定에 따른다.

第19條(總會의 區分 및 召集) ①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며 定期總會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한 每年2월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理事會의 要求가 있을 때
2. 在籍會員 3分の 1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②總會의 召集은 會議의 目的, 議案, 日時 및 場所를 明示하여 會議開催 7日前까지 會員 및 監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0條(總會의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2. 任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3. 協會의 合併 및 解散決議에 關한 事項
4. 事業計劃 및 豫算과 決算의 承認에 關한 事項
5. 其他 理事會의 議決로써 總會에 附議하는 事項

第21條(總會의 議決方法) ①總會는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한 在籍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在籍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分の 2以上の 贊成으로 한다.

1. 定款의 變更

2. 協會의 合併 및 解散

③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22條(理事會의 召集)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在籍理事 3分の 1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3. 監事의 要求가 있을 때

②理事會의 召集은 會議의 目的, 議案, 日時 및 場所를 明示하여 會議開催 7日前까지 任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會 構成任員 過半數의 同議가 있을 境遇에는 例外로 할 수 있다.

第23條(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
2. 協會의 合併 및 解散에 關한 事項
3. 主要規定의 制定 및 開閉에 關한 事項
4. 事業計劃 및 豫算의 審議에 關한 事項
5. 決算의 審議에 關한 事項
6. 總會에 附議할 議案 및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7. 會費調整 議決에 關한 事項
8. 支部의 設置 및 閉鎖에 關한 事項
9. 常勤任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10. 其他 協會 運營에 關한 主要事項

第24條(理事會의 議決方法) ①理事會는 理事會 構成任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任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25條(會議錄) 總會 및 理事會의 議事 進行에 關하여는 그 經過內容 및 結果를 記載한 議事錄 및 會議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出席한 모든 理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5章 財產 및 會計

第26條(運營財源) 協會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정 관

出損金, 會費, 手數料, 分擔金 및 補助金等の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27條(會計 및 會計年度) ①協會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하며 特別會計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事業經營上 必要할 때 設置한다.

②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28條(基金의 運營 및 共與利益의 分擔) ①協會는 目的事業의 遂行과 會員의 共同利益 增進을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基金을 造成, 運營할 수 있다.

②協會는 總會의 承認을 얻어 基金의 造成에 必要한 資金等に 充當하기 爲하여 會員으로부터 分擔金を 徵收할 수 있다.

③基金의 造成 및 運營에 關하여는 理事會의 決定에 따른다.

④基金의 運營과 目的事業의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되는 利益은 各 會員에게 均等하게 함을 原則으로 한다.

는 遞信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1. 任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2. 事業計劃 및 豫算 決算에 關한 事項
3. 主要規定의 制定 및 開閉에 關한 事項
4.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事項
5. 委託業務의 推進에 關한 事項

第31條(殘餘財産處分) 이 協會가 解産한 後의 殘餘財産은 遞信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이 協會와 目的이 類似한 團體에 寄贈하거나 또는 國庫에 歸屬한다.

第32條(諸規定) 定款에 規定이 없는 事項으로서 協會의 組織에 關한 事項과 業務運營上 必要한 事項은 別途로 規定을 制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第33條(分告方法) 法令 또는 이 定款의 規定에 依한 協會의 公告는 서울特別市에서 發刊되는 日刊新聞에 掲載하여야 한다.

第 6 章 事 務 局

第29條(事務局) ①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局을 두고 必要한 職員을 둔다.

②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③事務局의 職制, 定員 및 給與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附 則

1. (施行日) 이 定款은 遞信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協會에 入會申請書를 提出하고 創立總會에 參席한 者에 對하여는 第6條의 理事會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 7 章 補 則

第30條(承認 및 報告) ①協會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事項에 關하여는 遞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協會의 合併 및 解散
3. 補助金의 使用
4. 分擔金의 運用 및 共濟活動

②協會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事項에 對하여